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</u>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3부장 우기열 전화 031-749-0500 / 팩스 031-739-4715 보 도 자 료 2020. 7. 15.(수)

제 목

## 동산담보 P2P 대출업체 55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 중간 수사결과

-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, 8명 인지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□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는 동산담보 P2P 대출업체 "P펀딩"의 투자 사기
 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,
  - "P펀딩" 및 연계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<u>허위 차주업체를 내세워 대출을 실행할 것처럼 동산담보 평가서 등 투자 제안 서류를 허위 작성 또는 위조하고 허위 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사모펀드를 운용</u>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<u>6개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자금 551억여원, 개별투자자 156명으로부터 3억여원 합계 554억여원을 편취</u>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,
  - **재무이사 등 10명을 입건**하고, 그 중 범행 총괄한 **업체 대표** 및 146억여원 편취에 가담한 허위 차주업체 운영자 등 **3명을 구속 기소하였음**
- '20. 7. 현재 환매 중단된 펀드금액이 280억원을 상회하는 등 미상환 실 피해금액380억여원 상당임
  -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, 편취한 투자금 중 **540억여원이 기존 부실** 대출을 '돌려막기' 상환에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

## 1 피고인

- 피고인
  - A○○(47세, 'P펀딩' 대표)
  - B○○(44세, 'P펀딩' 물류총괄이사 겸 연계대부업체 명의상 대표)
  - C○○(50세, 홈쇼핑 납품업체 등 11개 차주업체 실 운영자)
  - ※ 'P펀딩' 이사 4명 등 기담자 7명 불구속 수사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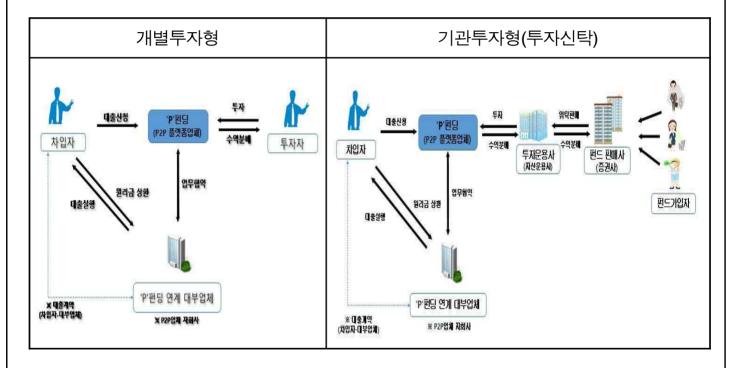
## 2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, B○○는 공모하여, '18. 4. ~ '19. 11.경 34개 명의 차주법인을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를 작성하고 상업송장 및 외환송금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6개 자산운용사 및 개별 투자자 156명에게 제공하여 마치차주법인들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투자 요청하고, 이에 속은 피해 자산운용사들로부터 '홈쇼핑펀드' 등 펀드자금약 551억원, 개별 투자자 156명으로부터 약 3억원, 합계약 554억원을 투자금명목으로 받아 기존 부실대출에 돌려막기 등 편취 [특경법위반(사기), 사기,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]
- A○○는, '18. 10. ~ '19. 11.경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P펀딩 여신관리팀에 지시하여 연계대부업체가 자산운용사에 양도한 대출채권에 대해 차주들에게 추심문자 발송 등 무허가 채권 추심영업 [신용정보법위반]
- C○○는, P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11개 차주법인을 제공하여 143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하고, '14. 1. ~ '19. 7.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형제, 지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, 개인

# 사용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2개 법인 자금 합계 13억여원 횡령 [특경법위반(사기), 특경법위반(횡령), 업무상횡령, 사기]

- ※ P펀딩은 온라인상으로 다수 투자자들과 차입자를 연결하는 'P2P'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 업체로, 대부업체인 P펀딩대부와 연계하여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판매상품인 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, 관리하여 수수료 수익을 창출 / 약 10년 넘게 영업 유지하여 '원조, 1세대, 최장수' 플랫 폼업체로 알려져 있고 2018년 누적펀딩 실적 기준 업계 5위 규모
- ※ **피해 자산운용사들**은 위 P펀딩의 대출 상품에 대해 펀드 설정하여 운용한 투자운용사로,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투자 유치된 펀드자금을 P펀딩에 투자

#### <P펀딩의 투자금 수수 및 대출 취급 구조>



## 3 주요 수사 경과

- 2019. 12. 금융감독원, 대검에 수사의뢰(A○○, B○○)
- 2020. 5. C○○ 등 가담자 8명 인지, P펀딩 사무실 등 3곳 압수·수색
- 2020. 6. A○○ 등 3명 구속
- 2020. 7. 14. **A**○○ 등 3명 구속 기소

## 4 참고사항

- P펀딩은 담보물 부실 관리, 일부 차주들의 영업부진, 연체 등으로 이미 2018. 2.경 기준 약 145억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되어 추가 부실이 예상되자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대위 상환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름
-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펀드 운용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라할 수 있는 펀드 가입자들에게 대규모 피해 초래한 점, 직원들 동원한 조직적 범행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 감안하여 당청에서 치밀하게 수사하였고, 신속히 범행 전모 확인 후 주요 책임자를 구속 기소함
  - ※ '19. 11. 기준 '자비스홈쇼핑', '옵티멈마켓브리지' 등 관련 펀드 가입자 23,000여명, '20. 7. 기준 환매 중단된 펀드금액 280억원에 이르는 등 미상환 실 피해금액 약 380억원으로 확인
-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 진행하고, 최근 접수된 펀드가입자들의 자산운용사 및 펀드판매사 상대 고소 사건도 계속 수사 예정임
- 앞으로도 검찰은 광범위한 피해를 발행시키는 P2P 대출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음 ◎